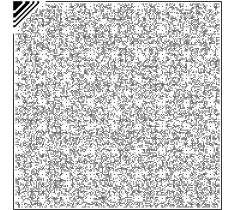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 및 시행 알림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11.29)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263호)를 제정('20.12.22)·시행('21.1.1)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21.1월부터 3월말까지 제도 시행 초기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을 알려드리니, 재포장 지도·점검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각 시·군·구에서 현장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각 시·도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월간 현장계도 실적을 취합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1부.
2. 현장계도 실적(양식) 1부. 끝.

환경부 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장), 부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구광역시(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전광역시(자원순환과장),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물환경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환경정책과장), 관련업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무관 권혁진 환경사무관 김도기 과장 이채은 전결 2020.12.23.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정책과-6032 (2020. 12. 23.)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46 팩스번호 044-201-7351 / khj10040@me.go.kr / 대국민 공개